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51회 제2차 정례회(2021.12. 8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
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복지도시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21-136
----------	--------

2021. 12. 8.
전문위원 신준호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안 자 : 최은하 의원 외 13인
- 나. 제 안 일 : 2021. 11. 19.
- 다. 회 부 일 : 2021. 11. 22.

2. 제안이유

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, 사회안전망 구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(안 제3조~안 제4조)
- 다. 지원의 범위(안 제5조)
- 라.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(안 제6조)
- 마. 교육 및 홍보(안 제7조)
- 바. 표창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마포구청(관련부서)장 의견조회

다. 기타

1) 입법예고 : 2021. 11. 19.~ 11. 24.(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제정 배경

- 최근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입주민의 갑질과 열악한 근무 형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이 같은 근로환경으로 공동주택 근로자를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내모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. 이에 부당한 업무지시 및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최근 「공동주택관리법」이 개정되는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구성원 상호 간의 상생과 협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3조)
-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4조)
- 공동주택 노동자의 기본시설 설치와 법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5조)
- 공동주택 노동자 실태조사 및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도, 인권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6조 ~ 제7조)

나. 종합의견

- 서울 자치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음. 이에 따라 경비원 등

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로 떠오른 공동 주택 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임.

- 최근 국회에서는 소위 ‘경비원 갑질 금지’ 를 위한 내용으로 「공동주택 관리법」의 개정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음.
- 상위법 개정을 기반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주택 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상태임.
- 따라서,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·복지 증진 차원의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며, 이러한 노력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가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 조치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.

1) ‘주민 폭행에 극단선택 경비원...경비초소 분향소엔 주민 추모물결’,연합뉴스(2020.5.11.)

[관계법령]

「공동주택관리법」

제3조(국가 등의 의무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1.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
 2.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
 3.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
-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65조의2(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)

-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(「경비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)는 「경비업법」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입주자등,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,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입주자등,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1.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
 2.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
-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